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21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기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 기준 등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의 지급 대상 변경(안 제1조)

(현행) : 고등학생(통·리장 자녀)

(개정) : 고등학생·**대학생**(통·리장 자녀)

나. 장학생의 자격 기준 정비(안 제2조)

다. 장학생의 선발기준 마련(안 제4조)

라. 장학금의 금액(안 제6조)

- 고등학생 및 대학생 모두 연 100만원 지원

마. 장학금의 지급 방법(안 제7조)

바. 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유 정비(안 제8조)

3. 조 례 안 : 불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불임\)](#)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통·리장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리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품행이 단정한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생(「초·중등교육법」의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고교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 성적으로 갈음한다.
2.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 최종학기 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갈음한다.

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최근 2년간 시군 구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를 별표 기준에 따른 득점순서대로 순위를 결정하여 심사하고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된 장학생 수가 제5조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하거나 심사된 장학생 모두에게 지급할 장학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별표 기준에 따른 상위점수자 순으로 선발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별표의 항목 순서별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④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지급받은 다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구미시 통·리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모두 연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내 장학생의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1. 장학생의 부모가 통·리장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자퇴 또는 휴학하거나 퇴학,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학교장,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미시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장학생 선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지원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신 설>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제4조 관련)

1. 총점배분

계	장학금 수혜 횟수	통·리장 경력	다자녀가정	통·리장 상훈
100	30	40	20	1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본 장학금 수혜 횟수

기 수혜횟수	0회	1회	2회	3회 이상
점 수	30	20	10	5

나. 통·리장 경력

근속연수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20	16

다. 다자녀 가정

자녀 수	4명 이상	3명	2명	1명
점 수	20	15	10	5

라. 통·리장 상훈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
점 수	10	8	6	4

비고 1. 경력 산정 기준일 : 장학생 선발계획 기준

2. 통·리장상훈은 행정기관의 상훈으로 위 기준일 이전에 수상한 것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 ②, ③ 생략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통·리장자녀 장학금 대상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 발생(안 제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2022년 통·리장 대학생 자녀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자격 및 타 장학금 중복기준을 적용한 결과 46명으로 연 100만원 지급 시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내 용	산출내역	금액(천원)
합 계		46,000
통·리장 자녀 장학금	1,000,000원×1년×46명	46,000

※ 2022년 통·리장 대학생 자녀 현황

- 통·리장수 : 82명
- 제외대상 : 36명(임기 1년 미만, 타 장학금 수혜자)
- 선발가능대상 : 46명

※ 1인당 장학금 지급 금액 : 연 100만원

※ '21년 고교 대상 장학금 지급 없음('21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

- 일부 사립고교(자사고 등)에 한하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 총무과 자치행정계장 김응중(054-480-6761)
- 총무과 자치행정계 이현우(054-480-6764)

소 관 부 서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박 주 영
	담 당	김 응 중
	담 당 자	이 현 우 (480-6764)